

김정은 시대 ‘북한식’ 금융개혁에 관한 연구

황 수 민* · 양 문 수**

❖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시대 실시된 금융 개혁을 분석하는 데 있다. 북한의 금융개혁은 재정개혁, 기관·기업소 개혁, 지방 분권화 등을 포괄하고 뒷받침하는 ‘북한식’ 개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김정은 집권 이후 제·개정된 관련 법률과 북한의 공식 문헌을 활용하였다. 보완적으로 실제 제도의 작동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탈북자 인터뷰를 시도했다.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은 화폐순환구조의 회복과 시금융 제도 내 편입, 지방의 자력갱생이라는 기대효과를 갖는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은 제재가 강화되는 대외요건 속에서 효율적으로 국내 자금을 동원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금융개혁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핵심어: 북한 금융, 금융개혁,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 금융제도, 상업은행, 금융기관 체산제, 지방별 현금류통책임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시대 실시된 금융개혁을 분석하는 것이다. Chavance는 개혁을 “국유와 일당독재는 유지하면서, 경제적 성과와 체제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적 조치를 실시하는 과정(Bernard Chavance et al 1994, 2-3)”으로 정의했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금융개혁을 분석한다는 것은 북한 금융 부문에 실시된 일련의 제도적 조치가 시행되는 과정을 분석한다는 것과 같다.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금융’을 ‘계획화’와 동일선상에 놓고, 내각

DOI: 10.35390/sejong.26.1.202002.007

*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 졸업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과 국가경제지도기관에 재정 및 금융관리의 개선을 주문¹⁾했다. 조선중앙은행 총재 역시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자금 수요를 국내 자금을 원활하게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충족시켜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²⁾”고 밝혔다. 실제로 김정은 집권 이후, 금융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 다양한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다만 북한에서는 여타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에서 시도된 금융개혁과 궤를 달리하는 ‘북한식’ 금융개혁이 실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일원적 은행제도의 해체에 머무르거나, 개혁 조치와 보조를 맞추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이 앞서 그동안 잃어버린 제 기능을 회복하고 금융 부문의 개혁을 발판 삼아 재정 개혁, 기업 개혁, 지방 분권화 등을 추동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급격한 체제전환을 경험한 구소련 국가들의 경우 고전적 사회주의 은행제도인 ‘일원적 은행제도(Mono-banking System)’의 해체를 금융개혁의 주된 목표로 삼고 의사결정의 분권화, 시장 조정 기제 활용 등의 조치를 함께 실시(Janos Kornai 1992, 131-133)했다. 금융개혁 조치는 은행부문 개혁에 집중되었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권고대로 은행부문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가격 자유화, 이자율 자율화, 신규 은행 진입 허용, 국유 상업은행의 민영화 등(Kobil Ruziev, Shella Dow 2013, 5)이 실시되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국영기업의 은행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억제하기 위해 엄격한 신용할당 정책이 실시되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의 경우 개혁 초기 대체로 안정된 물가와 성장률, 높은 저축률 등 양호한 경제여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정부의 통제력도 지속되었다(임호열 외 2015, 9). 이를 바탕으로 이원적 은행제도의 도입이라는 정책목표에 맞추어 중국인 민은행은 중앙은행 업무만을 담당케 하고, 점진적으로 국유상업은행들을 설립하였다.

사금융의 존재도 ‘북한식’ 금융개혁의 또 다른 특징이다.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우 사금융이 경제 전반에 퍼질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으며, 일부 출현한 사금융의 경우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제도권 내로 흡수되었다. 북한 당국은 사금융의 포섭과 통제라는 요소까지 고려해야만 했다.

따라서 ‘북한식’ 금융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정, 기업, 지방, 사금융 등 금융과

1) <Daily NK> (2018/1/1) “[전문] 2018년 김정은 신년사”(검색일: 2020.02.18.) <https://www.dailynk.com/2018-김정은-신년사/>.

2) <조선신보> (2015/2/3) “조선중앙은행 김천균총재/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연계된 부문들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금융을 이해하기 위해서 은행만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 금융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금융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특히 금융 부문의 자료 부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북한의 금융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는 문성민(2016), 이영훈(2017) 이석기 외(2018)를 들 수 있다. 문성민은 정책사(政策史)적 측면에서 접근해, 북한 당국이 실시한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서술했다. 이영훈(2017)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조치들이 자금순환 구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카드 사용·사금융 등 이와 관련된 부문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이석기 외(2018)는 최근 진행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에서 추진되고 있는 금융·재정 개혁조치를 정리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앞선 선행연구들이 북한의 금융개혁을 금융, 넓게는 재정과 연계해 살펴본 것에 그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 금융·재정부문 개혁 조치 외에도 은행 개혁, 기업소 개혁, 지방 분권화 등이 금융 개혁과 맞물려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북한식' 금융개혁이 여타 부문 개혁을 추동하고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금융·재정 개혁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연계된 폭넓은 부문의 개혁조치를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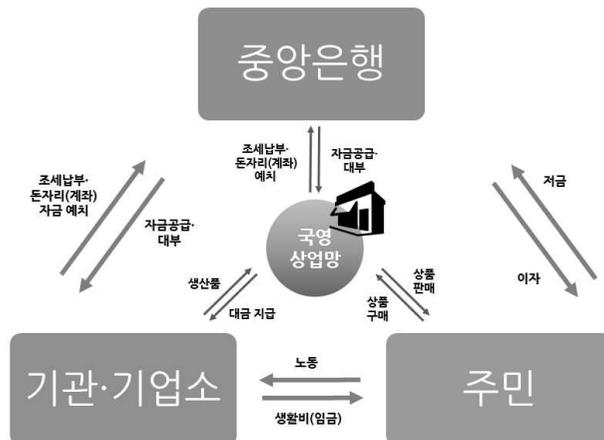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운영 방식의 특징 중 하나는 법과 제도의 개편을 통해 경제관리방법의 개선과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간행된 201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을 활용하여, 북한의 법령을 분석하였다. 다만 금융개혁의 '북한적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 관련 법령에 그치지 않고 재정·지방·기업·계획 일반 등 다양한 범주의 법령을 분석했다. 법령 분석과 함께 북한의 학술 잡지 『경제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사회과학원학보』, 『정치법률연구』, 『천리마』 등을 활용해 법 제정과 관련된 북한 당국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법령과 북한의 공식문헌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제도가 실제 북한에서 작동하고 있는 행태를 분석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대부분 김정은 집권 이후에 탈북한 주민들로, 북한 은행과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자로 한정했다. 인터뷰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II. 금융개혁의 배경

1. 화폐순환구조의 붕괴

일국(一國)의 경제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가계와 기업, 정부는 ‘화폐’를 매개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소득을 지출하는 순환을 반복한다. 이러한 과정을 단순화해 모형화한 것이 ‘국민경제 순환모형’이며,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표방하는 북한은 ‘유일적 자금공급체계’를 핵심으로 국민경제 순환모형을 설계했다.

〈그림 1〉 북한의 국민경제 순환모형(유일적 자금공급체계)



출처: 저자 작성.

전통적 계획경제 하에서 북한의 기관·기업소는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며, 추가적인 자금 수요는 국가 단일은행인 조선중앙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기업소가 확보한 자금으로 생산한 물품은 국가유통망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급된다. 주민들은 기업소에서 분배받은 생활비(임금)로 국영상점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국영상점에 지불된 대금은 은행을 통해 국가가 흡수한다. 국민경제 순환에 수반되는 화폐의 이동은 모두 조선중앙은행의 단일 돈자리(계좌)를 거치게 되며, 국가는 기업소에 발생한 잉여를 조세의 형태로 다시 환수한다.

이처럼 완결된 구조에서는 화폐와 상품이 대응되어 움직이며, 화폐 유통을 국가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 실물과 화폐 간 1:1 대응에 기초한 통제·관리 방법을 구소련에서는 ‘루블에 의한 통제(ruble control: kontrol’ rublem)’라고 지칭(고일동 2004, 11)하였으며, 북한 당국도 이를 같은 맥락에서 ‘원에 의한 통제’로 지칭하였다. ‘원에 의한 통제’가 잘 작동되면, 기업소의 잉여는 모두 국가로 이전되며 기업소의 탈세, 화폐의 침전·누수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경제난으로 ‘원에 의한 통제’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화폐순환구조가 붕괴되면 국가로 화폐가 환수되지 않고, 국가는 국민경제에서 발생한 잉여를 흡수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의 재정통계는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북한은 매년 4월경에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소위 ‘재정보고’의 형식을 빌려 내각의 재정상이 전년도 결산내용과 당해 연도 국가예산을 공개해왔으나, 김일성 사후 이듬해인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재정에 관한 통계를 일체 발표하지 않았다. 2001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 회의(2001.4.5.)에서 1994년 이후 처음으로 국가예산이 다시 발표되었는데, 예산의 규모는 경제난이 심화되기 이전의 절반 수준(고일동 2004, 17)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 1〉 북한의 재정수입 구성

(단위: 100만 북한 원, %)

항목	1991년		1996년		2000년		2002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구성비
총세입	37,121	100	20,320	100	20,903	100	100
거래수입금	17,252	46.5	8,080	39.8	9,030	43.2	-
국가기업이익금	14,259	39.1	6,290	31.0	6,877	32.9	77.6
기타	5,610	15.0	5,950	29.2	4,996	23.9	-

출처: 고일동 2004, 14.

화폐순환구조가 붕괴되면 국가로 화폐가 환수되지 않으며, 국가는 국민경제에서 발생한 잉여를 흡수할 수 없게 된다. 국가로 환수되지 못한 화폐는 주민들 수중에 침전되었다. 실제로 북한 정부는 7·1조치 실시 직전에 제작·배포한 조선노동당 내부

문건에서 “솔직히 말해 지금 국가에는 돈이 없지만 주민들 사이에는 국가예산의 2년분이 넘는 돈이 깔려 있다.”고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양문수 2016, 167).

2. 공공융의 기능 마비와 사금융의 확산

북한 당국은 90년대 중반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재정제도를 변경하고 기업소에 대한 자금보장책임을 국가 재정에서 기업소 및 은행으로 전환(문성민 2016, 23)하였다. 이전에는 국가가 보장했던 기업소 자금 보장책임을 은행에 떠넘긴 것이다. 제도 변경으로 기업소의 대부 수요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화폐순환구조가 붕괴된 상황에서 은행 역시 대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은행의 자금난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일반 주민들은 은행에 저축한 금액도 인출하기 어려워졌다. 그 결과 주민들은 은행에 저금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은행의 자금난이 더욱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더군다나 기업소와 달리 일반 주민들은 제도적으로 은행에서 대부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배급제가 중단되고 자력갱생을 요구하는 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자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었지만, 제도 내 공공융은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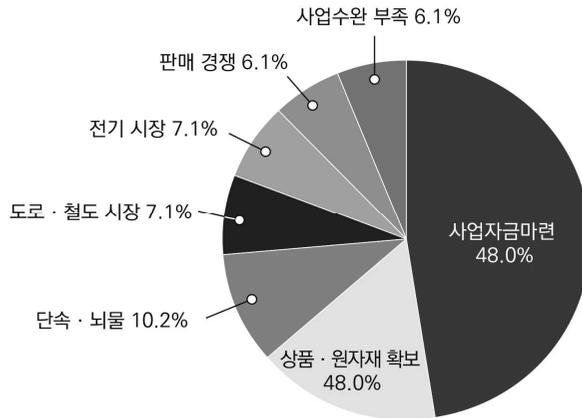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에서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할 때, 애로사항이 무엇이었는지”라는 질문에 많은 탈북자들은 ‘사업자금 마련’을 꼽았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로 미루어볼 때, 북한에서는 자금의 초과수요 상태가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융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틈을 타 사금융은 점차 성장하기 시작했다³⁾. 농촌의 고리대에서부터, 돈주의 기업소 지분 투자에 이르기까지 사금융은 합법과 비법의 회색지대에서 그 영역을 꾸준히 확장해왔다. 시장에서 사적자본을 축적한 돈주는 작동이 멈춘 은행의 역할을 대신하며 사금융의 발달을 추동했다. 송금·환전의

3) 돈 빌려주고 빌리고 하는 건 많아요. 장기로는 잘 안 빌려주고, 보통 단기로 빌려요. 이자가 한달 빌리면 10프로, 장기적으로 했다면은 한 30프로 해요. 중국이랑 거래하거나, 밀수하거나 하면 비싼 돈(이자)을 물더라도 빌리는 거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드러내놓고는 안하니 까 앞에서는 돈주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아는 사람들끼리 빌려주고 이자 받고(2017년 탈북, 양강도 해산시).

경우는 사금융이 공금융의 기능을 사실상 대체했으며, 돈장사꾼, 돈데꼬처럼 전문화·분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림 2〉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애로사항(1순위)



주: 2011년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2012년 조사 결과임.
출처: 장용석 외 2015, 112

기능이 마비된 은행 역시 자력갱생을 위해 사금융의 행위를 모방하기도 했다. 은행이 기업소에게 외화를 대출해주거나, 수익사업 차원에서 국가가 정한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 즉 고리대금업자들과 유사하거나 약간 낮은 금리로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대출(양문수 2016, 174) 해주기도 했다.

Ⅲ. 금융개혁 조치의 주요 내용

1. 은행 부문

1) 중앙은행법·상업은행법 개정과 은행조직 개편

북한은 2004-2006년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을 제정하고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환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과거를 의식한 듯 북한

당국은 우선 은행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작업에 돌입했다.

과거 북한에서 자본주의 상업은행은 “유휴화폐를 흡수하여 자본으로 전환시키고 이때 생기는 대부리자와 예금리자의 차액을 리운으로 먹는(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 845-846)” 기관으로 격하된 바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법」·「상업은행법」 개정을 1년 앞둔 북한 문헌에서는 변화된 시대 요구에 맞게 은행을 잘 활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상업은행은 원래 유휴화폐자본을 흡수하여 화폐수요자들에게 대부해주고 예금리자와 대부리자의 차이를 리운으로 취득하는 은행(박종훈 2013, 43-44)” 이라고 태도를 바꿨다. 대부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에서 수익을 얻는 일은 상업은행의 고유한 임무로 재평가 되었으며, 은행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풀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2015년 7월에는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개정되었다.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이 개정된 2015년, 북한 당국은 1990년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던 ‘전국 재정은행 일꾼대회’를 25년 만에 개최하였다. 북한 언론은 대회를 보도하면서 “함경북도은행 총재⁴⁾”라는 전에 없던 표현을 사용하였다. 동일한 기사에서 조선중앙은행 지방지점이 ‘중앙은행 함경남도 정평지점’과 같이 지칭된 것과는 구분되는 표현이다. 평양방송 역시 ‘자강도은행’이란 표현을 사용⁵⁾하였다.

조선중앙은행 조직은 평양에 위치한 본점과 11개의 도총지점(9개 도 소재지, 나선특별시, 개성직할시), 210개의 지점(시·군·구역)(김광진 2016, 80)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언론보도와 개정법령을 종합하면 북한 당국은 ‘지방’을 단위로 하는 ‘북한식’ 이원적 은행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은행 도(道) 총지점에서 상업은행 조직을 ‘○○도은행’으로 분리한다. 남은 중앙은행 조직은 ‘○○지점’이 된다. 도 단위에서는 ‘○○도은행’이 상업은행 업무를 총괄하고, 아래 단위인 시·군·구 단위에서는 저금소를 ‘상업은행화⁶⁾’해 은행기관으로 활용한

4) <조선중앙통신> (2015/12/13) “제3차 전국재정은행일꾼대회 진행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시었다”.

5) <연합뉴스> (2016/2/9) “북한에도 ‘지방은행’ 속속 등장…中 개혁개방 초기와 유사”(검색일: 2019.10.07.) <https://www.yna.co.kr/view/AKR20160206025300014>.

6) 특히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은행기관들을 상업은행화하여 그 역할을 높이는것은 날을 따라 늘어나는 자금적수요를 내부예비를 통해 적극 탐구동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금혁 2016, 130).

다. 실제 성공할 경우 저금소의 전국 영업망을 활용할 수 있으며, 큰 투자 없이 점진적으로 상업은행제도를 도입·실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중앙은행법」 개정 제 10조는 ‘은행리사회’ 구성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 조직 개편으로 발생한 ‘은행리사회’ 구성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법령에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탈북한 북한주민 역시 인터뷰에서 중앙은행 지방조직의 변화를 언급하였다.⁷⁾

개정 「상업은행법」에서도 상업은행의 업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상업은행의 업무로 새롭게 ‘은행카드 업무’가 추가⁸⁾되었다. 북한에서 카드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이 2010년이고, 북한의 학술잡지에서 전자화폐·카드·결제 등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가 대략 2012년 후반(김성철 2012; 류천 2013)이다. 「상업은행법」이 개정된 2015년은 북한 사회에서 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시기임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 개정은 현실에서 일어난 변화를 사후적으로 법령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항간에서 주장하는 대로 「상업은행법」이 사문화된 법이고 「상업은행법」의 개정이 선언적 성격에 그치는 것이라면, 이미 현실에서 일어난 변화를 사후적으로 법령에 추진할 필요는 없다. 「상업은행법」에서 규정된 내용 그대로 북한에서 상업은행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상업은행법」을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은행 부문 개혁의 청사진으로 파악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 아니다. 「중앙은행법」과 동시에 「상업은행법」이 개정된 점, 중앙·상업은행법 개정 내용과 궤를 같이 하는 여타 법령이 김정은 집권 이후 집중적으로 개정된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7) ○○은행으로 간판이 붙어있어요. 도 단위로 가면 평안북도 은행 되어있어요. 은행이 구, 리도 많고 다 관리하지 못하니까 자그마한 상업은행 하나 차려놓고 너네가 관리해서 돈을 빨아들이라고 하죠. 이 지구는 너네가 관할해라 라는 식으로. 전적으로는 ○○군 은행인데요. 작은 저금소를 가지고 상업은행이라고 하죠. 원래는 저금을 하게 되어있는데 저금을 안 하니까 세금을 빨아들이는 것만 하죠. 이제는 은행에 돈이 있어요(탈북자 B씨, 2015년 탈북, 함경북도 연사군).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제18조 상업은행의 업무종류. 상업은행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예금업무 2. 대부업무 3. 돈자리의 개설과 관리업무 4. 국내결제업무 5. 대외결제, 수형과 증권의 인수 및 할인, 환자조작업무 6. 외화교환업무 7. 거래자에 대한 신용확인 및 보증업무 8. 금융채권발행 및 사고팔기 업무 9. 귀금속거래업무 10. 화폐의 팔고사기업무 11. 은행카드업무 12. 이 밖에 승인받은 업무(법률출판사 2016, 444).

2) 상업은행의 역할 강화: 자금 증개

김정은 집권 이후 집중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기업소법」을 살펴보면 기업소는 자체로 재정권리권을 가지고 경영활동자금이 부족한 경우, 은행 대부나 ‘주민유휴화폐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법률출판사 2016, 290). 현실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았지만 기업소의 은행 대부는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⁹⁾다. 결국 새롭게 추가된 ‘주민유휴화폐자금을 동원리용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개정의 핵심 골자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이석기 외 2018)에서는 기업소가 주민의 유휴화폐를 동원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은행의 증개·관리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소와 주민(돈주)이 직접 1:1 계약을 맺고 자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대리인인 은행이 중간에서 계약과 자금이동을 통제하는 형태라고 하는 형태다.¹⁰⁾

은행은 그 발생초기부터 유휴화폐자금을 자기수중에 집중시키고 그것을 대부공간을 통하여 리용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 일시적유휴화폐자금을 은행을 통하여 동원, 리용하려면 그 자금을 은행자금으로 전환시키는 공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김영남 2013, 47).

기업소와 주민 사이에 직접 자금이 오가는 경우, 국가가 이를 통제할 수도 없으며 둘 사이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북한 당국은 소유권 개혁에 대해서만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해왔기 때문에, 은행이 자금이동에 개입해 소유권 문제를 우회하고 계약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적인 상업은행의 주요 업무는 자금의 조달과 증개다. 자본주의 상업은행은 자금의 조달과 증개를 간접적으로 수행하지만, 북한의 상업은행이 간접적 자금증개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은행의 기능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작동하기 이전까지 은행의 유휴화폐자금 동원 증개 조치를 통해 회색지대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져 온 주민(돈주) - 기업소 간 자금대차 계약을 제도 내로 편입하고, 이 과정에서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제226조(은행대부계약당사자의 의무) 은행대부계약에 의하여 은행 기관은 대부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화폐자금을 넘겨줄 의무를 지며 대부받는자는 그 자금을 리용하고 원금과 리자를 은행기관에 물 의무를 진다. 은행대부계약은 은행기관이 대부받는자의 신청을 승인하고 대부금을 넘겨준 때에 맺어진다(법률출판사 2012, 179-209).

10) 개별 기업체들이 필요한 자금적수요를 자체로 해결하라는 거죠. 서로 계약서도 쓰고 은행에 보관하라고도 합니다. (은행이)입금증이란 같이 보관해주죠. 위에서 내려온 지시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탈북자 C씨, 2014년 탈북, 평양).

상업은행의 역할을 회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주민 유휴화폐지급 동원 메커니즘



출처: 저자 작성.

2) 금융기관 채산제 실시

북한의 기관·기업소는 독립채산제¹¹⁾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¹²⁾이다. 2006년 제정 「상업은행법」에서는 상업은행 역시 채산제 원칙이 적용¹³⁾됨을 밝혔다. 은행의 독립채산제 적용은 김정은 집권 이후 ‘금융기관 채산제’로 구체화 되었다. 25년 만에 열린 제3차 재정은행일군대회에서 김정은은 금융기관 채산제의 엄격한 적용(김정은 2015, 73-79)을 요구했으며, 뒤따라 북한의 학술잡지에서도 금융기관 채산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특히 금융기관이 채산제를 준수하게 되면, ‘지역의 자금수요를 보장하고 (지방의)수지균형’이 달성된다(전룡삼 2017, 44)고 밝힌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앙은행 지방지점 조직 일부를 상업은행으로 개편한 ‘북한식’ 이원적 은행제도वाद도 맥이 닿아 있다. 국가 차원에서 화폐유통의 관리 단위를 ‘지역’으로 설정하고, 지방 인민위원회와 지방 상업은행에 해당 지역의 화폐유통 안정화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해당 지역의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의 관리 감독 하에 지역 내 현금수요를 보장할

11) 국가의 지도 밑에서 국영 공장·기업소가 상대적으로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하면서,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기업관리방법(사회과학출판사 1995, 381-383).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98년 개정 헌법 제33조.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옹호 리용하도록 한다(조선로동당 출판사 1998).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제4조(상업은행의 운영원칙) 국가는 상업은행이 경영활동에서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채산제로 운영하도록 한다(법률출판사 2012, 917-923).

책임을 지게 된다. 지방의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의 통제와 감독을 받되, 지방인민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편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정재호 2019 미간행, 46-47).

채산제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 ‘자금적밀천’도 충분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1960년대 기관·기업소의 독립채산제 도입과 실시가 당국의 재정지출 축소와 예산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실시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2. 기관기업소 부문

1)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기업소의 확대된 재정권

기관·기업소 부문 금융개혁은 ‘제도화’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의 내각 관계자는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 대해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사업을 내각이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집단주의에 기초해 공장·기업소에 책임과 권한을 똑바로 부여해 국가와 생산단위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¹⁴⁾이라고 밝혔다. 또한 점진적으로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할 것이며,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계획·가격·화폐 등 여러 부문의 동시다발적인 개혁이 실시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구체화되었다. 개혁 조치는 「기업소법」 개정으로 법령에 반영되었으며 그 결과 기업소는 공식적으로 ‘실질적인 경영권¹⁵⁾’을 갖게 되었다. 김정은은 기업소에 실질적인 경영권을 이전하면서, 국가에 기대지 않고 기업소 자체로 ‘든든한 자금 토대’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 결과 전략적 의의를 갖는 주요 기업소 외의 기업소들은 류동자금¹⁶⁾을 스스로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난 이후 북한 당국은 관련 제도를 개편해 기업소가 순수득 몫에서 자체류동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업소 분배 항목 중 가장 나중 순서였기 때문에 실제 기업소가 류동자금을 자체적으로 조성하기는 어려웠다.

동시에 기업소가 자체 류동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원천이 확대되었다. 첫 번째는

14)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의 완성을/내각 관계자 인터뷰,” 『조선신보』, 2013년 5월 10일.

15) 기업소의 ‘실질적인 경영권’은 계획권과 생산조직권, 재정관리권 등을 포함해 9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법률출판사 2016, 286-293.

16) 류동자금이란 저장, 생산 및 류통단계를 끊임없이 거치는 재생산과정에 기업체들이 상시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할 물자 및 화폐재산을 일컫는다.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에서 기업소 류동자금은 국가예산에서 공급하고, 기업소는 보충적으로 은행 대부를 활용한다.

인민소비품생산순소득 중 자체 류동자금으로 분배되는 몫이다. 두 번째는 기업소 자금 중 유희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금이며, 마지막은 주민 유희화폐자금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주민의 유희화폐자금 동원을 허용한 부분이다.

사회주의기업체들에서 주민유희화폐자금을 동원하는것은 기업체들이 재정관리권을 옹바로 활용할수 있도록 주민들의 경제적요구와 리해관계에 맞게 신용을 직접적으로 리용하는 형태이다. 주민유희화폐자금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주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신용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다(강철수 2016, 51).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기업소에게 부여된 ‘재정관리권’을 활용해 주민들로부터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기업소 류동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대로 주민과 기업소 간 자금 대차계약은 국가기관인 은행이 중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금융개혁 조치가 기업소 부문 개혁과 맞물려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경제난을 거치며 기업소가 주민(돈주)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행위는 보편화되었는데, 이를 제도 내로 편입시켜 합법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2) 현금외화돈자리 개설 허용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에 따라 개정된 2015년 「인민경제계획법」은 계획지표의 분담을 공식화했다.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지표, 국가적으로 반드시 틀어 쥐여야 할 중요지표는 중앙지표로, 그 밖의 지표는 지방지표와 기업소지표로 분담¹⁷⁾했다. 기업소지표에 필요한 자재의 공급계획 역시 기업소 스스로 세우게 되었다. 원자재 조달, 생산 그리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두 기업소가 결정하게 된 것이다. 원자재를 시장에서 시장가격으로 조달하고, 판매 역시 시장가격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시장의 많은 영역이 제도 내에 편입되었다.

계획과 생산 부문뿐만 아니라, 금융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제13조 국가계획기관은 인민경제계획지표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분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적요구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창발성을 옹계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지표, 국가적으로 반드시 틀어쥐여야 할 중요지표는 중앙지표로, 그 밖의 지표는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 분담하여야 한다(법률출판사 2016, 532).

거래와 결제 관행들이 제도 내로 편입될 필요가 있었다. 1947년부터 북한 기관·기업소의 돈자리(계좌)는 ‘1기관 1구좌’ 원칙이 통용되어 왔다. 하지만 시장화의 진전으로 기업소가 보유한 현금은 공식 돈자리를 거치지 않고 제도 밖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북한 당국은 제도 밖 현금을 제도 내로 편입하고, 기업소 개혁 조치에 궤를 맞추어 돈자리 부문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김정은은 2012년 8월, ‘화폐를 합리적으로 동원 이용하는데서 당면하게 제기되는 문제와 대책적 의견’을 비준(이석기 외 2018, 279)하고, 기업소가 추가로 현금돈자리와 외화돈자리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돈자리와 달리 현금돈자리는 기업소가 입금한 금액 범위 내에서 현금을 자유롭게 찾아 쓸 수 있으며, 외화돈자리에는 기업소가 조성한 외화를 입금할 수 있다. 과거 기업소가 보유한 현금은 대부분 시장에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돈자리를 거칠 수 없었다. 기업소 보유 현금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았지만 모두 제도 밖에서 유통된 것이다. 기업소 일꾼들은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국가가 발행한 화폐는 다시 국가로 환수되지 못했다. 이는 조세 수입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연속적으로 은행의 자금난을 악화시켰다.

현금·외화돈자리가 개설되면, 기업소가 돈자리 밖에서 음성적으로 유통시키던 현금은 돈자리를 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소의 재정회계가 과거보다 합법적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조세 당국으로서는 조세 징수의 대상이 되는 거래를 좀 더 용이하게 포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화폐순환구조’와 ‘원에 의한 통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은행을 중심으로 화폐가 유통될 수 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돈자리 자금의 송금과 환치, 지불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3. 지방 부문

1) 지방별 현금류통책임제 실시와 ‘지방’ 상업은행

지방별 현금류통책임제의 기원은 김정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북한은 지방별 현금류통책임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 당이 내놓은 지방별 현금류통책임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밑에 지방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여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현금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자체로 보장하고

현금류통의 계획적조절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제도입니다(김정일 2012, 381).

북한 당국의 주장은 지방별 현금류통책임제를 정확히 실시하면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현금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달성된다는 것이다. 지방별 현금류통책임제 실시 목적을 밝힌 문헌에서도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

지방별 현금류통책임제집행에 대한 평가의 특성은 우선 자체의 현금수입으로 현금지출을 맞추는것을 평가의 기본척도로 한다는데 있다. 국가가 지방별 현금류통책임제를 실시하는 중요한 목적은 모든 지방과 지역들에서 자체의 현금수입으로 현금지출을 보장하게 함으로써 나라의 화폐류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자는데 있다(심금주 2017, 47).

앞서 살펴본 상업은행의 금융기관 재산제 적용과 마찬가지로 '지역'단위의 화폐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 단위의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과 상업은행화, 금융기관 재산제의 지역적 역할, 지역별 현금류통책임제를 함께 고려하면 북한 당국의 금융 관리·감독 단위가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방 단위에서 분화된 중앙은행 지점 조직은 개혁의 결과로 이전보다 권한과 역할이 확대된다. 동시에 '지방'의 상업은행으로서 해당 지방의 현금유통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자체로 예산 수입을 거두어야 하는 재산제의 원칙에도 구속된다. 지역별 현금류통책임제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국가가 지방 금융기관에 호소하는 일종의 '선전 구호'라고 할 수 있다.

2) 지방 재정체제 개편

(1) 지방예산제 법제화

금융개혁과 궤를 맞추어 재정부문의 개혁도 실시되었다. 지방에서 현금유통이 안정되고 지방 상업은행의 역할이 회복되려면 우선 지방에서 돈이 돌아야, 즉 지방이 거두어들일 수 있는 예산이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지방예산제의 역사는 결코 짧지 않지만, 지방예산제를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은 1970년대 후반 채택된 지방예산 특별법규를 제외하면 특별히 존재하지 않다가 2012년에 들어서야 「지방예산법」이 제정되었다.

「지방예산법」의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지방살림살이’의 책임은 중앙이 아닌 ‘지방인민위원회’가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방 인민위원회는 지방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지방예산사업의 조직과 지도를 맡게 되었다. 지방예산체계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우선 중앙이 아니라 해당 지방의 인민위원회로 귀속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되었다. 먼저 장세다. 북한의 공식시장은 시(군)인민위원회 상업과(부) 및 재정과(부)에서 정책적·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각 시장의 관리소에서는 매대 자릿세와 정기적인 장세를 수취하고 출입과 각종 제반 상행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홍민 외 2016, 11). 징수된 장세는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⁸⁾ 북한 당국이 하루에 시장에서 거두어들이는 장세 규모가 시장환율 기준으로 약 17만 4천 달러~22만 3천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홍민 외 2016, 54)된다.

두 번째는 편의봉사업에서 발생하는 봉사료 수입금이다. ‘편의봉사업’이란 서비스업을 의미하는 북한식 명칭이다. 북한에서는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개인들이 기관 이름을 내걸고 식당·이발·목욕·세탁·운송 등의 사업을 해왔다.¹⁹⁾

김정은 집권 이후로는 개인이 상점, 식당, 이발소 등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대신 수익금의 10%를 지방정부에 납부(임을출 외 2017, 65)하도록 했다. 다른 개혁조치와 마찬가지로 회색지대에서 관행으로 행해지던 불법행위를 제도 내로 편입하고, 예산수입을 확대하려는 조치로 파악된다. 북한 당국은 2014년 12월 「편의봉사법」을 제정하고, 이를 제도화했다. 은행부문 개혁 조치에 잇따라 「지방예산법」, 「편의봉사법」 등 여타 부문 개혁도 함께 제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눈여겨 볼 만하다.

(2) 출납체계 개선과 상업은행의 대출재원 확보

지방 단위로 재편된 상업은행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주민들의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은행이 대출재원을 확보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18) 한 군(郡)에 허용하는 시장 개수가 있어요. 장세는 시장관리소에서 거두어들이고 파는 물건마다 조금씩 가격이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장세는 중앙으로 안 가고 군에서 다 씁니다. 군 사무원이 나 연로자 생활비로 쓴다고 들었습니다(탈북자 D씨, 2016년 탈북, 평양).

19) 식당 명판은 국가 명판이죠. 거기서 돈 많은 사람들이 꾸러가지고 제가 식당 접대원으로 돈을 벌죠. 한 달에 국가에서 내라는 돈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원하는 거예요(탈북자 E씨, 2017년 탈북, 양강도 혜산시).

한다. 북한의 재정여건이나 은행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북한 당국은 ‘출납체계 개선’을 통해 지방 상업은행의 부분적 기능회복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군 예산의 유일한 출납기관은 은행지점들이다. 시, 군은행지점들은 기관, 기업소들로부터 예산수입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별적예산돈자리에서 계산하며 시, 군재정기관과의 연계밑에 예산자금을 보장하고 시, 군예산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계산과 결산을 진행한다. 그러므로 시, 군재정기관과 은행지점들이 서로 합심하여 시, 군예산에 대한 출납조직을 잘하여야 한다(윤충원 2013, 116-117).

지방예산 수입은 거래수입금·국가기업리익금·지방유지금·협동단체리익금·고정재산감가상각금·부동산사용료수입금·사회보험료수입금 등(박유성 2012, 76)이 있다. 상업은행은 국고업무를 대리하기 때문에²⁰⁾, 해당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조세는 해당 지방 상업은행에 집중된다.

북한 당국이 규정한 은행이 대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은행의 자원은 다음과 같다. ①은행자체자금, ②은행에 예치된 국가자금, ③국가적 소유의 기관, 기업소 결제 돈자리자금, ④협동단체 기관, 기업소 결제 돈자리자금, ⑤결제도중자금, ⑥정당, 사회단체들의 돈자리 자금, ⑦저금, ⑧보험자금, ⑨발권자원, ⑩재정은행기관자금, ⑪기타채무(리상조 1994, 35)다.

즉, 중앙은행으로 이전되기 전까지 머무르는 국가납부금, 지방정부로 넘어가기 전까지 머무르는 조세, 지방정부 돈자리에 머무르는 자금 등은 모두 해당 지방 상업은행이 대출재원으로 활용(정재호 2019 미간행, 46-47)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따로 중앙은행 조직에서 분리된 지방 상업은행에 따로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일시적으로 머무는 자금을 대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은 안정적으로 대출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기업소와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선순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제40조(국고업무의 대리) 국고업무대리는 해당 상업은행이 한다. 해당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의 국가예산자금지출문건에 따라 자금을 신속히 지출하며 거래자가 바치는 국가예산납부금을 중앙은행에 제때에 집중시켜야 한다(법률출판사 2016, 444).

4. 일반 주민 대상 조치

1) 카드 도입과 사용 장려

2010년 말 조선무역은행의 ‘나래카드’를 시작으로 북한에서도 카드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은행이 발급하는 카드 외에도 평양지하철, 백화점, 주유소 등지에서 사용할 가능한 충전식 카드 역시 북한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2015년부터 발급되기 시작한 조선중앙은행의 ‘전성카드’는 각 조선중앙은행 지점에 송금할 수 있으며, 대불지금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각 도(道) 은행들에 이미 ATM 기계가 설치되었고, 전자카드를 이용한 송금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²¹⁾²²⁾²³⁾

전성카드는 계좌 잔고에 연동되는 일종의 직불카드로 추정된다. 북한 은행에서 송금하려면 카드를 만들어야 하며, 카드와 연동된 돈자리에 현금을 입금해야 한다. 북한 당국이 송금에 카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서비스를 활용해 은행으로 자금을 집중시키기 위함이다. 은행에 집중된 자금은 다시 은행의 대출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사금융에 대응하는 경쟁력도 갖추게 되었다.

최근 북한 당국은 유선전화 요금 납부에도 카드 발급과 사용을 강제했다.²⁴⁾ 북한 내에서 유선전화가 보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송금과 마찬가지로 은행에 자금을 집중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1) <자유아시아방송> (2017/1/4) “북 지방도시 은행에 ATM 설치 확대”(검색일: 2019.12.07.) w www.rfa.org/korean/weekly_program/radio-world/radioworld-01042017152044.html?searchterm=utf8:ustring=+ATM.

22) 다른 사람들이 은행 취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은행이 운영되네, 했어요. 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은행을 많이 이용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에다가 물건을 보내잖아요. 보내면 그걸 돈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은행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운영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줄 서서 현금도 찾아오고 그러더라고요(탈북자 F씨, 2018년 탈북, 양강도 해산시).

23) 일반 사람들은 전성카드 써요. 주로 군대에 자식 보낸 사람들이 돈을 부쳐주려고 카드 씁니다. 카드만 있다고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카드를 입을 수 있는 기계가 은행 지점 안에 있어요. 아침 아홉시부터 오전 11시 반, 오후에도 잠깐 열어놓습니다. 그럼 줄서서 이용하지요(탈북자 G씨, 2018년 탈북, 양강도 해산시).

24) 작년(2017년)부터 유선전화요금을 카드로 내라고 했어요. 은행에 가서 카드에 돈을 넣고, 카드를 가져가서 전화비를 넣어요. 그래서 유선전화 있는 집들은 다 카드가 있습니다(탈북자 G씨).

2) 국영상업망 재건을 통한 화폐환수 시도

2000년대 들어 시장화가 진전되고,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8·3 노동자 확대 조치 등으로 시장 유통망은 급격히 팽창하게 되었으며, 개인은 기관·기업소의 명의를 빌려 국영상점을 임대해 장사를 계속했다.²⁵⁾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개인 자금이 투입된 상업·유통업, 편의봉사업 부문의 질서를 국가 주도 하에 새롭게 재편하려 노력했다. 최근 북한 당국이 식당을 비롯한 상점, 편의봉사소, 전문 마트, 편의점 등을 활발히 보급시키고 있는 것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 북한의 문헌에서는 북한 당국이 국영상업망 재건에 힘을 쏟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현금류통의 공고성은 주민의 지불능력있는 수요에 따르는 소비상품량을 보장하여 주민들의 수증에서 류통하고 있는 현금을 제때에 은행기관에 집중시켜야 실현된다. (...) 주민들의 수증에서 그들의 소비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성된 화폐자금은 국가상업류통망을 통한 소비품의 류통을 통하여 국가은행으로 집중될수 있다. 국가은행에로의 화폐자금의 집중은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화폐자금의 계획적이며 통일적인 리용을 실현할수 있게 한다(박춘광 2012, 35-36).

‘소비자들의 화폐소득에 의하여 규정되는 상품 및 봉사에 대한 현실적요구’를 옹계 타산하는 것, 즉 주민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를 분석해 상품과 서비스를 국가 상업망을 통해 공급하면 주민들 속에 머물러 있는 화폐를 국영상업망 → 은행의 경로를 통해 국가로 집중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화폐가치가 안정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 상업기관의 역할을 강화했다. 지방 공장에서 생산된 소비품은 해당 군(郡)소매 상업기업소와 계약을 맺고 유통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도매 상업기업소를 거쳐 시중에 유통되었지만, 이제는 지방에서 생산된 소비품의 경우 소매 상업기업소와 생산 단위가 직접 계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5) 청진에도 공업품상점, 식료품상점, 직매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개인이 운영합니다. 돈이 많은 개인이 운영하는데, 그 상점에다가 조직생활 면하기 위해 조직에 이름을 걸고 제 돈으로 상품사서 넣고 판매해서 한 달에 얼마씩 입금하고 그렇게 합니다(탈북자 H씨, 2016년 탈북, 평양).

주문제에서는 주문상품을 생산에 맞물리는 사업을 도매상업기업소가 맡아하게 된다. 그것은 도매상업이 생산과 소매상업을 연결하는 중간고리이며 상품이 생산기업소로부터 도매상업기업소로, 도매상업기업소로부터 소매상업기업소로 이동하는 것이 상품운동의 정상경로라는 것과 관련된다. (···) 자기 군생산, 자기 군소비상품은 군소매상업기업소와 지방산업공장사이에 직접 계약을 맺고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임영찬 2012, 16).

이렇게 지방공장과 군 소매 상업기업소가 직접 계약하는 경우, 생산 단위와 생산 단위로부터 조세를 거두어들이는 지방 인민위원회와 출납을 담당하는 지방 상업은행 모두 과거보다 유통할 수 있는 화폐량이 늘어나게 되며, 화폐의 유통과정도 짧아지게 된다. 즉, ‘지방별 현금류통책임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또한 상업기업소는 판매수입금의 일부와 주민 유희화폐자금, 즉 현금을 소비품 구입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최진수 2015, 51). 이렇게 되면 국가 기관인 상업기업소에 상품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예산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IV. 북한 금융개혁에 대한 평가

1. 금융개혁의 기대효과

1) 화폐순환구조의 회복

북한의 금융개혁 조치 중 현금·외화돈자리 개설 조치, 카드 도입과 사용 장려 정책, 지방별 화폐류통책임제와 국영상업망 재건은 북한의 화폐순환구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화폐순환구조가 회복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현금·외화돈자리가 개설되면, 제도 내로 들어올 수 없었던 현금이 은행을 통할 수 있게 된다.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현금이 지속적으로 돈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은행은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²⁶⁾ 화폐순환구조의 한 축인 은행이 바로 서면,

26) 실제로 북한 당국은 돈자리 개설·이용에 따르는 계약을 상당부분 완화하였다. “예전에는 돈자리 하나 만들려면 상위기관에 보고를 계속 해야 됐어요. 이제는 지방에서 자체로 허용해줍니다. 그러면 돈자리를 새로 만들수 있는 겁니다.” (탈북자 H씨).

기업소 - 은행 - 주민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화폐순환구조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카드 도입과 사용 장려 정책이다. 북한 당국은 외화상점이나 택시뿐만 아니라, 유선전화·송금 등 카드 사용을 강제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에서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금을 주고 카드를 충전하거나, 카드와 연동된 돈자리에 돈을 입금해야 하는데, 모두 제도 내로 주민의 현금이 유입된다. 유선전화나 송금은 북한 주민에게 인기 있는 서비스다.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부문에 카드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제도 내로 들어오는 현금의 양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카드 사용이 확산되면 국가가 효율적으로 주민 수중의 화폐를 흡수할 수 있으며, 은행을 통해 현금이 유통된다. 기업소의 현금·외화돈자리 개설 조치와 마찬가지로 은행을 통한 화폐거래가 증가함으로써 화폐순환구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리유정 2018, 43).

세 번째는 지방별 현금류통책임제 실시다. 지방별 현금류통책임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대신,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 화폐유통의 책임자가 되어 원활한 화폐유통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지방별 현금류통책임제는 지방예산제, 금융기관 채산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상업은행 지점에서 금융기관 채산제를 준수하면 해당 지역의 화폐질서가 안정되며, 상업은행 역시 지방예산제 강화로 은행의 역할이 회복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지방별 현금류통책임제’가 준수되는 것이다.

마지막은 국영상업망의 재건이다. 국영상업망 재건이 화폐순환구조 회복에 기여하는 경로는 보다 단순하다. 시장과 비교해 국영상점이 경쟁력을 갖게 되면, 주민들은 시장보다 국영상점에서 많은 돈을 쓰게 된다. 국영상업망에서 거두어들인 돈은 은행으로 집중된다. 김정은 집권 이후 국영상점의 경쟁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실제로 국영상업망의 회복은 화폐순환구조 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는 국영상점에 돈이 들어가면서, 시장이 점점 몰락하게 됐단 말이에요. 장마당이 가. 다 장마당 하던게 이제는 다 상점으로 들어갔어요. 판매를 상점이 독점하게 되었어요. 사람들 생각도 장마당 가는 것보다도 상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인식이 많아졌죠(탈북자 G씨).

2) 사금융의 제도권 내 편입

다시 시도된 상업은행제도는 사금융과의 경쟁에서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앙은행 조직과 상업은행 조직이 분리됨에 따라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에, 상업은행은 상업은행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일원적 은행제도 하에서는 중앙은행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중앙은행 내에 상업은행 업무를 감독하는 부서와, 상업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모두 존재하는데,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게 된다.

은행의 사금융에 대한 경쟁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사금융을 제도 내로 편입시키려는 노력도 지속되었다. 일반 주민들의 환전, 송금은 물론 기업소와 돈주 간 자금계약 등 사금융이 담당해온 영역이 대부분 합법화 되면서 사금융 영역의 상당부분이 공금융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높다.

3) 지방의 자력갱생

북한 당국이 실시한 금융개혁 조치 중, 금융기관 재산제·지방별 현금류통책임제·지방예산제 제도화 조치는 서로 복합적으로 맞물려 작동하게 된다. 해당 조치가 정상적으로 시행·정착되면, 지방정부는 중앙의 재정적 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게 된다.

중앙은행 지점에서 분리되어 지방 단위로 재편된 상업은행 조직은 금융기관 재산제를 준수해야 한다. 지방 상업은행 조직이 금융기관 재산제를 준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은행의 화폐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에 이익을 안겨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업은행이 위치한 지역의 화폐수요를 책임지고 보장하고, 화폐유통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를 확대하면 ‘지방별 현금류통책임제’와 일맥상통한다. 상업은행이 제 역할을 다하면, 지방정부에도 (화폐적)이익을 안겨줄 수 있고, 지방 단위에서 화폐유통이 안정되면 전국적으로 화폐유통이 안정된다는 것이다.

물론 금융기관 재산제단위인 상업은행들이 자체의 금융업무수입으로 지역적인 지출을 보상하는것만으로도 나라의 화폐류통의 원활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그것은 지역적인 범위에서의 화폐류통이 나라의 화폐류통의 유기적구성부분을 이루고있는것 만큼 지역적범위에서 화폐류통의 원활성의 보장은 전국가적인 화폐류통의 공고성보장

에 영향을 주는 것과 관련된다(한영철 2018, 69-72).

금융기관채산제와 지방별 현금류통책임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 인민위원회와 지방 상업은행의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 당국은 시장에 대한 유화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장세와 봉사료수입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두 항목은 중앙이 아닌 지방 인민위원회로 귀속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일관적으로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예산수입은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여타 부문 금융개혁 조치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제도 밖에서 유통되던 화폐는 점차 은행을 통해 유통될 것이다. 이 경우 은행이 대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은행자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 상업은행이 지방예산제에서 ‘놀 수 있는 역할’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는다.

2. 북한 당국의 의도와 기대효과 실현 가능성

북한 당국이 다양한 금융개혁 조치를 도입하고 실시한 궁극적인 목적은 효과적으로 국내 자금을 동원하고, 중앙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는 김정은이 25년 만에 열린 ‘제3차 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재정은행사업을 개선강화하는 것은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요구입니다.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면 자체의 믿음직한 재정원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정은행사업을 개선강화하여야 강성국가건설에 필요한 자금수요를 자체로 보장할 수 있을뿐 아니라 사회생산물을 분배리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으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김정은 2015, 73-74).

은행, 기관·기업소, 지방, 주민과 관련된 금융개혁 조치도 모두 ‘재정토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다. 김정은은 재정은행사업이 국가관리의 수단이자, 기관·기업소 관리의 수단이지만, 재정은행사업이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

에 많은 자금이 재정은행기관의 통제 밖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자고 하여도 재정은행사업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재정은행사업은 국가관리의 수단일뿐만 아니라 기관, 기업소경영관리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 지금 재정은행사업이 당의 요구와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지지 못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가정에서 돈을 한사람이 틀어쥐고 써야 세간살이를 잘 꾸려나갈수 있는것처럼 국가에서도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하여야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갈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런데 자금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유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있으며 많은 자금이 재정은행기관의 통제밖에서 유통되고있습니다(김정은 2015, 74).

이러한 현실적 조건에서 북한 당국은 국내 자금을 원활하게 회전시켜 나라의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 밝혔다.²⁷⁾

‘국내의 자금이 원활하게 회전’되면, 즉 화폐순환구조가 회복되면 북한의 거시 불안정을 초래했던 무리한 화폐증발 없이도 시중에 침전된 화폐가 국가로 환수되며, 이를 통해 재정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자금용을 제도 내로 끌어들이려는 것도 마찬가지다. 공급용을 정상화하고, 자금이 양성화되면 화폐순환구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국가가 효율적으로 자금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 자력갱생을 요구하는 조치들의 경우, 지방 단위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효과적인 자금 동원뿐만 아니라 금융개혁 조치는 북한 정부의 재정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로 기업소의 자율성은 이전보다 대폭 확대되었으며, 지표 부담도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기업소가 기업소 운영의 자율성을 갖는 대신, 국가 재정에 의존하지 말고 기업소 스스로 필요한 자재와 자금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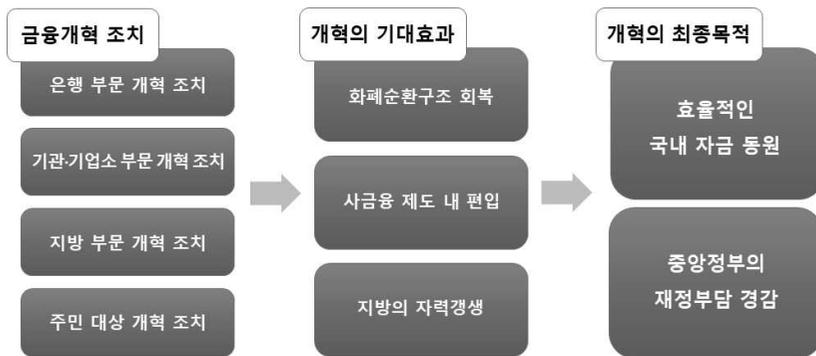
지방도 마찬가지다. 지방 부문 개혁조치의 핵심은 지방에서 필요한 돈은 지방 스스로 벌어서 확보하라는 것이다. 지방에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세원도 확대해주었으니 중앙에 기대지 말고 알아서 현금 수입과 지출을 맞추라는 것이다. 금융기관 재산제

27) <연합뉴스>(2015/2/3) “북한, 금융시스템에 새로운 변화 도입 나서” (검색일: 2019.4.2.) <https://www.yna.co.kr/view/AKR20150203091400014>.

역시 동일하다. 은행도 다른 기업소들과 마찬가지로 독립채산제를 준수하고 중앙의 지원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금융개혁 조치의 상당수가 하부 단위에 권한을 이양하는 대신, 중앙의 책임을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앙의 책임이라는 것은 재정적 지원을 의미하므로, 곧 금융개혁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은 경감될 것이다.

〈그림 3〉 북한의 금융개혁



출처: 저자 작성.

3. 개혁의 한계

다만 기대효과가 실제 현실에서 작동되지 않을 현실적 제약도 분명히 존재한다. 첫 번째 제약은 개혁조치의 일관성 문제다. 북한 당국은 과거 2000년대 시장화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거나, 화폐개혁과 같이 반동적인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여전히 경제주체들의 행동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 시간을 두고 당국의 태도가 일관된 것이라는 확신이 서게 된 후에야 개혁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경제주체들이 금융개혁의 결과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비공식적 영역에서 행동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은행이 기업소에 대출해주면서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대신, 과거와 같이 비공식적으로 사금융의 행태를 모방하여 기대수익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기업소도 마찬가지다. 현금 돈자리에 돈을 입금시키기 보다는, 확대된

재정관리권을 바탕으로 기업소 자체 수익 창출에만 매진할 가능성이 있다. 돈주와의 자금 대차 계약 역시 은행을 거치기보다는 협상의 수단으로만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제약조건은 여전한 사금융의 경쟁력이다. 카드나 송금 같은 경우 공금융이 사금융에 대한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한 수준이지만, 불법적 요인이 포함된 국외 송금, 이자율 경쟁이 가능한 자금 대차계약, 일반 주민의 자금 대부 등은 여전히 사금융이 공금융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다. 적극적인 사금융 대응 정책이 발표되지 않는 한 사금융은 공금융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침식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금융개혁 조치는 시장에 자리를 내어준 국가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동시에 시장에서 창출된 잉여를 효과적으로 국가 영역으로 포섭하려고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개혁 조치들은 시장에서 발생한 잉여를 국가가 포착하고, 국가의 통제영역을 확대하는 일관된 특징이 있다.

시장에서 잉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려면 시장화는 그 폭과 깊이에서 지속적으로 진전되어야 하지만, 개혁 자체는 국가가 시장의 영역을 침식하는 반(反)개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개혁은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국가가 관리·이용할 수 있는 시장의 힘과 국가의 통제력 사이의 균형을 찾는 문제가 된다. 국가가 흡수할 수 있는 이윤이 발생하는 동시에,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수준을 찾아내는데서 금융개혁의 성과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대효과 분석을 통해 금융개혁을 평가했다. 경제난을 거치며 북한의 전통적인 화폐순환구조는 붕괴되었다. 그 결과 국가는 '원에 의한 통제'를 상실하고, 국가의 예산수입은 격감했다. 이러한 틈에서 등장한 사금융은 시장화의 진전과 함께 공금융의 역할을 대체해 나갔다. 북한 당국은 나름대로 상업은행법을 도입하는 등 부분적인 제도 개편을 실시했지만, 기대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등장한 김정은은 '북한식 금융개혁', 즉 금융이 다른 부분의 개혁을 포괄하고, 추동하는 폭넓은 제도개혁을 실시하였다. 다른 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

들이 ‘일원적 은행제도’의 해체에 중점을 맞춘 것과 달리, 북한은 은행, 기관·기업소, 지방분권화 등 금융과 관련된 부문에서 금융개혁이 여타 부문의 개혁을 포괄하고 뒷받침하는 특징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2016년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을 비롯해, 북한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법령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북한의 공식문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북한식’ 금융개혁을 폭넓게 분석하려 노력하였다.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은 복합적으로 화폐순환구조의 회복, 사금융의 제도 내 편입, 지방의 자력갱생이라는 기대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은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자금을 동원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자료 부족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다. 북한의 금융개혁은 다른 체제전환국의 통상적 ‘개혁’과는 구별되는 ‘북한식 금융개혁’이다. 은행이나 금융이라는 일부분 분석에 그쳐서는 북한식 금융개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금융개혁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 재정과 예산, 기업, 지방 등 금융과 연계된 부문들에 대한 포괄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역시 자료 부족이라는 한계를 온전히 극복해내지는 못했다. 북한의 금융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예산수입, 통화량, 인플레이션율과 같은 정량적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정량적인 데이터를 입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추후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북한 금융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정량적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투 고 일: 2020.01.13.

심사완료일: 2020.02.14.

게 재 일: 2020.02.28

참고문헌

- 강철수. 2016. “사회주의기업체들에서 류동자금 보장조직의 중요요구,” 『경제연구』. 제3호: 50-51.
- 고금혁. 2016. “현시기 은행기관들을 상업은행화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4호: 130-132.
- 고성국. 2015. “군인민봉사지도관리의 지위와 역할,” 『경제연구』. 제1호: 23-26.
- 고일동. 2004. 『북한의 재정위기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과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김광진. 2008. “북한 외화관리시스템의 변화와 외화의존도의 증대,” 『수은북한경제』. 제5권 제1호: 19-41.
- 김명수. 2016. “공업기업소생산설비의 경제적쓸모와 그 타산원리,” 『사회과학원학보』. 제4호: 36.
- 김영남. 2013. “사회적자금운동과 은행의 역할,” 『경제연구』. 제2호: 47-48.
- 김정은. 2015. “재정은행사업에서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제3차 전국 재정은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2015년 12월 13일),” 『조선중앙년감 2015』.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 김정일. 2012. “재정은행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90년 9월 13일),” 『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리상조. 1994. “은행자원과 그 구성,” 『경제연구』. 제4호: 35-38.
- 리유정. 2018. “이동통신망을 리용한 주민금융봉사를 활성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경제연구』. 제2호: 42-43.
- 리희철. 2015. “공장, 기업소들에서 놓고있는 설비, 자재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리용하도록 하는 것은 현시기 경제적실리보장을 위한 중요방도,” 『경제연구』. 제1호: 34-35.
- 문성민. 2016. “북한 금융의 특징과 제도·정책 변화,” 『북한의 금융』.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 박유성. 2012. “현시기 국가예산자금의 분류기준과 주요내용,”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3호: 76.
- 박종훈. 2013. “은행의 유형과 그 기능,” 『경제연구』. 제2호: 43-44.
- 박춘광. 2012. “주민의 지불능력있는 수요에 따르는 상품적보장과 화폐류통공고화,” 『경제연구』. 제3호: 35-36.
- 법률출판사 편. 20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 평양: 법률출판사.

- _____. 20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평양: 법률출판사.
- _____. 20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편. 1985.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_____. 1985. 『경제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 편. 1995.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심금주. 2017. “현시기 지방별 현금류통책임제집행에 대한 평가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1호: 47-49.
- 양문수. 2016. “통일경제의 필수, 북한 금융시스템 점검,” 『한반도를 경영하라Ⅱ』.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 윤충원. 2013. “시, 군예산집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1호: 116-119.
- 이석기·권태진·민병기·양문수·이동현·임강택·정승호. 2018.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세종: 산업연구원.
- 이영훈. 2017.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자금순환 구조 분석,”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4월 21일): 49-68.
- 임영찬. 2012. “현시기 주문제를 철저히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1호: 16-18.
- 임호열·김영찬·방호경·김준영·최필수. 2015. 『중국·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룡삼. 2017. “화폐류통의 공고화와 그 실현방도,” 『경제연구』. 제1호: 43-45.
- 정광영. 2016. “자금리용에서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4호: 55-58.
- 정재호. 2019. 미간행, “‘북한식 상업은행’ 형성과 금융제도의 변화.”
-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1998.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최지영·정승호. 2016. “북한 시장의 물가와 인플레이션,” 『북한의 금융』.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 최진수. 2015. “량정부문 기업소재정의 본질과 그 특성,” 『경제연구』. 제1호: 50-52.
- 한국수출입은행 편. 2016. 『북한의 금융』.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 한영철. 2018. “금융기관 재산제와 그 운영에서 나서는 중요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1호: 69-72.
- 홍민·차문석·정은이·김혁. 2016.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홍증범. 2018. “사회주의상업은행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1호: 61-64.

〈로동신문〉.

〈자유아시아방송〉.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Daily NK〉.

Chavance, Bernard, Charles Hauss & Mark Selden. 1994. *The Transformation Of Communist Systems: Economic Reform Since The 1950s*. (New York: Routledge).

Kornai, Janos. 1992. *The Socialism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Ruziev, Kobil., Dow, Shella. 2013. *A review of banking sector reforms in transition economies*. Working Paper. UWE Bristol Staff Working Papers, UWE Bristol.

A Study on the Reform of the North Korean Financial System in the Kim Jong-Un Era

Soo Min Hwang and Moon Soo Y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inancial reforms carried out during the Kim Jong-Un era. North Korea's financial reforms are characterized by “North Korean style” reforms that encompass fiscal reforms, enterprises reforms and governance decentralization. For the analysis, official documents related to relevant laws that have been enacted and revised since Kim Jong-Un took power were reviewed. In addition,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were conducted to see how the actual system works and complement the analysis.

Financial reforms during the Kim Jong-Un era have the expectancy effects of recovery of the currency cycle, integration of the private financial system into the public financial system and self-reliance of local districts. This allow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o mobilize domestic funds efficiently and ease the central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amid toughened external sanctions. The study can provide implications for comprehensively analyzing financial reforms in the Kim Jong-un era and analyzing the effects of actual financial reforms.

Keywords: Financial System of North Korea, Financial Reform, Financial Reform of the Kim Jong-Un Era,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